

대법원 2023. 2. 23 선고 2022다26666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3. 2. 23 선고 2022다26666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나71078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 주식회사

피고, 상고인 1. B

2. C

판결선고 2023. 2. 23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. 선고 2021나71078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정희, 대법관 안철상, 대법관 이흥구, 주 심 대법관 오석준